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2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문진석)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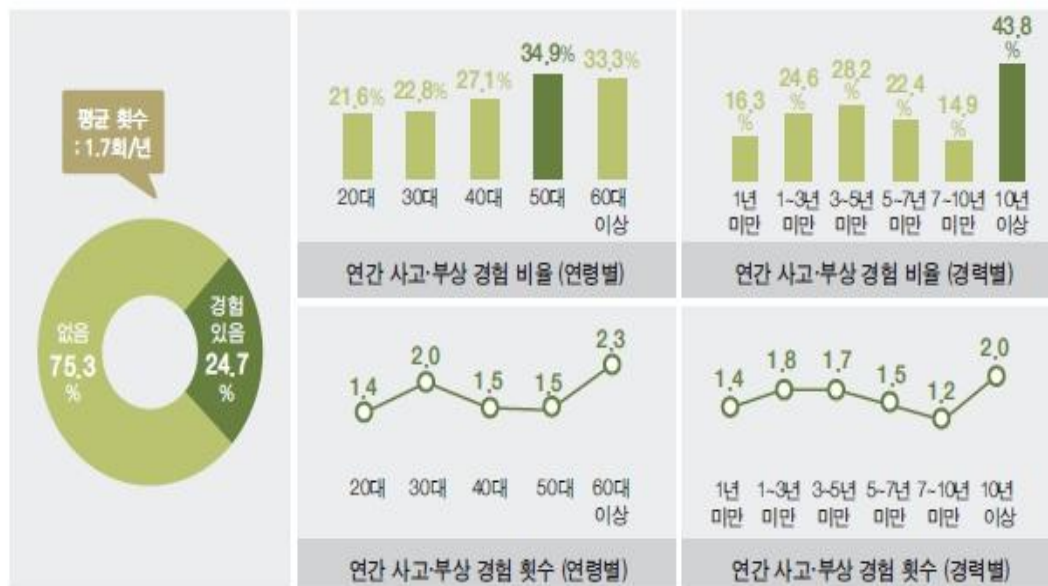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021년 458건, 2022년 상반기 287건, 승인건수가 2021년 287건, 2022년 상반기 258건에 이르고, 배달대행종사자의 경우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평균 1.7회의 사고·부상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

【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건수 (건)	76	119	177	458	287
산업재해 승인건수 (건)	70	106	160	417	258

출처 : 윤건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9.21.)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이렇듯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의2 신설), 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은 동조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개선권고에 대해서 사실상 개선명령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현행 법체계 상 자유업으로, 일정한 영업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만이 운영되고 있어,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이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인증제는 동법의 제정(2021. 1. 26. 제정, 2021. 7. 27.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종전과 같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되, 일정한 영업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우수 업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임²⁾.

이에 인증제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되 개선권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인증 갱신심사 시 심사항목으로 두거나 개선권고에 대한 입법례³⁾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불이행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73호, 2020.10.8.) 제안이유 중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p.35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은 자유업으로 두되, 이 중 인증을 받은 자만을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인증제를 통해 우수 업체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3)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제1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9호는 개정대상이 아니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